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2021. 3. 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05호로 2021년 2월 17일 이용주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영등포구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공문서 등 작성 시 국어기본법의 어문규범에 맞춰 작성하도록 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구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문서 등”의 범위 확대(안 제3조제4호)

- 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 추가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7조)

다. 국어 교육의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안 제10조)

라. 포상 관련 준용 조례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협 의: 관계부서(홍보미디어과) 협의 완료
- 입법예고 결과(2021. 2. 19. ~ 2. 24.):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영등포구와 산하 공공기관의 구성원,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의 조례의 제정 목적에서 적용 대상에 영등포구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을 포함하여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조문의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음.
- 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제4호에서 “공문서 등”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을 구 본청, 영등포구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으로 개정 하였으며, 이는 영등포장학재단이 추가되는 것임.
- 안 제7조에서는 개정된 인용 법률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였음.

- 안 제10조에서는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국어교육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음.
- 그 외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를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를 비롯한 그 산하기관 등에서 작성하는 공문서 등에 대해 한글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인용 상위 법령을 정확하게 표기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
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併記)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